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상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안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서식 정비 (안 제2조의2, 제9조, 제12조, 별지 제5호·제19호·제19호의2·제22호·제28호서식)

-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나.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 등 추가 절차 안내 (안 별지 제23호·제24호서식)

- 건설공사 등 사업 시행부지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과 별도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등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 무단점유 등 발생 예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9조제1항제2호 중 “시·도 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 중 “시·도 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뒤쪽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허가 대상에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 등과 별도로 해당 재산의 구분에 따라, 행정재산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를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신청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릅니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뒤쪽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허가 대상에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 등과 별도로 해당 재산의 구분에 따라, 행정재산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를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신청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릅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생략)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 -----.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 -----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 시·도유산위원회-----
-

3.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

-- 국가유산위원회-----

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u>문화유산위원회</u>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u>문화유산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국가유산위원회</u>----- -----. ⑤ ----- ----- --- <u>국가유산위원회</u>----- -----. ⑥ (현행과 같음)
---	--